

수도법시행령 [1969. 11. 26] 대통령령 제 4317 호]

개정 1982. 8. 18. 대통령령 제10,902호

제 1 조 (비전용수도의 기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 4호의 단서에 규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구경 25미리미터 이상의 도관으로서 전장 1천500미터. (82. 8. 18개정)
2. 저수조의 유효용량의 합계 100세제곱미터 (82. 8. 18 개정)

제 2 조 (수도시설의 증설 또는 개조공사) 법 제 2조제 7호에 규정하는 수도시설의 증설 또는 개조의 공사라 함은 다음의 각호에 계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급수량·수원의 종별·취수지점 또는 정수방법의 변경에 관한 공사.
2. 침전지·여과지·정수지·소독설비 또는 배수지의 신설·증설 또는 대규모의 개조에 관한 공사.

제 3 조 (상수보호구역의 지정) ①법 제3조 또는 법 제 9조제 1항 및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상수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82. 8. 18 개정)

②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을 때에는 자체없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구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82. 8. 18 개정)

제 4 조 (금지행위) 상수보호구역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오물·진액 또는 동물의 시체류를 버리는 행위.
2. 가축의 방사·어렵 또는 조류를 포획하는 행위.
3. 유영·목욕이나 세탁 기타 수질을 오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

제 5 조 (행위의 제한) ①상수 보호구역내에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2. 8. 18 개정)

1. 공작물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
2. 축목을 재배 또는 벌채하고자 할 때.
3. 토지의 굴착 또는 성토 기타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

②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이 아닌 경우에 상수 보호구역안에서 시장 또는 군수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82. 8. 18 개정)

제 6 조 (손실의 보상) ①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82. 8. 18 개정)

②제 1항의 손실의 보상은 수도사업자와 그 손실을 받은 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82. 8. 18 개정)

- ③ 제 2 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82. 8. 18 개정)
- 제 7 조 (보유시설) 수도는 원수의 질과 양, 지리적조건, 당해 수도의 형태에 응하여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취수시설은 필요한 양의 양질의 원수를 취수할 수 있을 것.
 2. 저수시설은 갈수기에 있어서도 필요한 양의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저수능력을 가질 것.
 3. 도수시설은 필요한 양의 원수를 송수할 수 있는 펌프·도수관 기타의 설비를 보유할 것.
 4. 정수시설은 원수의 질 및 양에 응하여 법 제 4 조에 규정하는 수질 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정수를 얻을 수 있는 침전지·여과지 기타의 설비를 보유하고 소독설비를 갖출 것.
 5. 송수시설은 필요한 양의 정수를 송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 기타의 설비를 보유할 것.
 6. 배수시설은 필요한 양의 정수를 일정한도 이상의 압력으로서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펌프·배수관 기타 설비를 보유할 것.
- ② 수도시설의 위치 및 배열에는 급수의 확실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 ③ 수도시설의 구조 및 재질은 수압·토압·지진 기타의 무게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이 있고 물의 오염이나 누수의 염려가 없어야 한다.
- 제 8 조 (재결의 선정) 토지수용법 제35조의 규정은 제 6 조제 3 항 및 법 제 8 조제 3 항의 규정의 의한 재결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 제 9 조 (권한의 위임) 전설부장관은 법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에 대하여는 제 1 호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82. 8. 18 전문개정)

1. 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의 지정.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 또는 정지의 허가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물의 공급규정의 인가.
 3. 시설용량 1 일 5 천세제곱미터 미만의 수도사업에 대한 법 제13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와 법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 및 처분(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4. 시설용량 1 일 1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수도사업에 대한 법 제13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와 법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 및 처분(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의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16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준공검사.
 6. 시설용량 1 일 5 천세제곱미터 미만의 전용수도에 대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준공검사.
- 제10조 (관할)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서 수도시설이 2 이상의 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수도사업 및 전용수도에 관한 것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관계 도지사 중의 1인이 이를 행한다.
1. 수도사업에 있어서는 급수구역을 그 행정구역에 포함하는 도지사(급수구역이 2이상의 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최대급수구역을 그 행정구역에 포함하는 도지사) (82. 8. 18 개정)
 2. 전용수도에 있어서는 거주에 필요한 물이 공급되는 지역을 그 행정구역에 포함하는 도지사(당해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최대급수지역을 그 행정구역에 포함하는 도지사) (82. 8. 18 개정)
- 제11조 (국가의 전용수도) ① 국가가 전용수도를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미리 전설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법 제16조 및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

은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국고보조)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의 각호에 계기하는 비용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종목 및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액의 10분의 9 이내로 한다.

1. 수도시설의 공사에 필요한 비용.
2. 수도시설을 위한 용지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

제13조 (협의)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법 제13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원수의 수질시험결과에 관하여 미리 보건사회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82. 8. 18 개정)

제14조 (인가신청) ①법 제13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기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81. 8. 18 개정)

②제 1 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급수구역 · 급수인구 및 급수량
2. 수도시설의 개요
3. 공사착공 · 준공 및 급수개시예정연월일.
4. 공사비예정액 산출근거 및 그 재원
5. 경상수지의 개요.
6. 요금 · 급수장치 공사비용의 부담 구분 기타 공급조건.
7. 1 일 최대급수량 및 1 일 평균급수량.
8. 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수량계산 및 수질 시험결과.
9. 수도시설의 위치(표고 및 수위를 포함한다) · 규모 및 구조.

10. 정수방법

11.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삭제(81. 1. 28 대형 10179)

제15조 (공사감독자의 자격)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공사의 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

종 학교의 토목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에 수도공학 또는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82. 8. 18 개정)

2.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토목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수도공학 또는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후 2년이상 토목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82. 8. 18 개정)

3. 5년이상 토목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4. 건설부령으로 전 각호에 계기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 (준공 및 수질검사) ①법 제16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는 건설부장관이 수질검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 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2. 8. 18 개정)

제17조 (수도관리자)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제15조제 1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2년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2.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토목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수도공학 또는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후 5년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82. 8. 18 개정)

3. 제15조제 1 호 및 제 2 호에 규정하는 학교에서 공학 · 이학 · 농학 ·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후 제15조제 1 호에 규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는 4년이상, 동조제 2 호에 규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는 8년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4. 10년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5. 건설부령이 전 각호에 계기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급수인구 만명이하의 수도사업 및 시설용량 1일 1천세제곱미터 이하의 전용수도에 관하여 제1항중 제1호의 2년을 1년으로, 제2호의 5년을 3년으로, 제3호의 4년을 2년으로, 8년을 4년으로, 제4호의 10년을 7년으로 한다. (82. 8. 18 개정)

③시설용량 1일 1천세제곱미터 이하의 수도사업이나 전용수도로서 당해 수도가 소독 설비 이외의 정수시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또 자연유하만으로 급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자를 관리자로 할 수 있다. (82. 8. 18 개정)

제18조 (전용수도의 인가신청)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기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2. 8. 18 개정)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1. 1. 28 대령10179)

1.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
2. 삵제(81. 1. 28 대령 10179)
3. 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수량계산 및 수질 시험결과.
4. 수도시설의 개요.
5. 수도시설의 위치(표고 및 수위를 포함한다) · 규모 및 구조.
6. 정수방법.
7. 공사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8.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 (공업용수도등) 제3조 내지 제8조 · 제9조(법 제2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공급하는 공업용수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 제10조 · 제12조 및 제14조 내지 제16조(수질검사에 관하여는 제외한다)의 규정은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의2 (용수공급규정) ①산업기지개발공사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 수도시설관리권을 출자 받아 공업용수를 그 수요자에게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결정 · 용수요율 및 용수구설치절차 등에 관한 용수공급규정을 정하여 건

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용수공급규정에는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요율을 구분 결정하여야 한다.

②산업기지개발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수공급규정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업용수의 수요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2. 8. 18 신설)

제20조 (강제징수의 위촉)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구역 외에 급수구역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물의 대금 또는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강제징수를 위촉할 경우에는 납입의무자 · 납입금액 납입기한을 기재한 징수위촉서를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촉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징수한 금액 중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체없이 징수를 위촉한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82. 8. 18 개정)

제21조 (수입금의 사용제한) ①건설부장관이 법 제3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수도사업의 수입금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이외의 목적에 사용함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할 금액 · 기간 ·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를 명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의 4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을 때에는 수도사업의 수입금의 사용에 관한 처리상황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2. 8. 18 개정)

부 칙(81. 1. 28 대령 1017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8. 18 대령 10902)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제9항중 제4호 · 제5호 · 제23호 및 제46호를 삭제한다.